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옥실”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옥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제곱미터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 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이라 한다)”를 “소형 주택”으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u>소형</u> ----: -----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가. ----- 60제곱미터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u>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u> -----.
<신설>	<후단 삭제>
	라. <u>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제곱미터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u>

라. (생 략) 2·3. (생 략)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u>원룸형</u>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u>원룸형</u>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u>원룸형</u>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 ----- ----- -----. 1. <u>소형</u> ----- ----- ----- ----- 2. ----- ----- ----- ----- ----- <u>소형</u> ----- ----- ----- ③ ----- ----- ----- <u>소형</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